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338

발의연월일: 2020. 8. 31.

발 의 자:이태규·김영식·박대수

태영호 • 윤주경 • 유경준

유동수 · 이종성 · 김정재

김석기 · 조정훈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폭언· 폭행 및 부당한 지시를 하여 경비원이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, 현행법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음.

이에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,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제6항 등). 법률 제 호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6항 중 "하며,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"를 "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 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2조제1항 중 "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 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
- 2. 제65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(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	제65조(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
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) ①	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) ①
~ ⑤ (생 략)	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	6
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	
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	
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	
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	<u>ট</u>
하며,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	<u>다</u> .
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	
하여서는 아니 된다.	
<u><신 설></u>	⑦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
	및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
	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
	또는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
	<u>다.</u>
<u>⑦</u> (생 략)	<u>⑧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
제102조(과태료) ① <u>제38조제2항</u>	제102조(과태료) ① <u>다음 각 호의</u>
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	
<u>으로 사용한</u> 자에게는 2천만원	
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<u><신 설></u>	1.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

	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
	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
	<u>자</u>
<u><신 설></u>	2. 제65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
	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
	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
	<u>한 자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